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기재부 협의 필요)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10.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491”을 “1,495”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91”을 “1,49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31”를 “232”로 하고, 8등급 외무공무원 “176”을 “177”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5”를 “276”으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42”를 “4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491</u>	<u>1,495</u>	+4
외무공무원 계	<u>1,491</u>	<u>1,495</u>	+4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u>231</u>	<u>232</u>	+1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176</u>	<u>177</u>	+1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275</u>	<u>276</u>	+1
.	.	.	
.	.	.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42</u>	<u>43</u>	+1